



2023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http://ipsi.hansei.ac.kr>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www.hansei.ac.kr

지원자 유의사항

[기본사항]

- 본교는 제출서류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의 원서접수 완료를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학 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와 제출서류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열 구분은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 기준입니다.(문/이과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대입지원에서 부정행위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항상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사항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 및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미확인 및 불이행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입생 선발 사정 원칙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본교의 학칙에 따릅니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 수시모집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대상에서 제외함.)
-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시모집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구분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중등록 금지]

- 총원합격자 발표 기간에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대학별 입학 전형이 종료된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사항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지원 또는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 수시모집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 가능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등록확인예치금 납부 기간 포함)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을(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 하여야 합니다.

■ 정시모집

-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총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시모집에서 교육부가 구분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이 없습니다.
- 정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정시모집에 2개 이상의 대학(산업 대학·교육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간에는 복수 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 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 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 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 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교 지원 관련 사항]

- 본교 수시모집의 전형 간에는 중복(복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본교 정시모집의 각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교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 포기로 인하여 총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에 포함해서 선발합니다.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에만 게시합니다.
- 본교 지원 당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2023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단, 일본 등 3월 졸업 국가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졸업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초과한 경우에도 본교에서 수학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교에 제출된 서류는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추후 서류위조, 허위 기재 등 부정 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합격 또는 입학 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졸업인증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관련 사항]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모집 6회 초과지원이 아닌 이상 지원취소, 전형 관련 서류반환은 불가하며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대입 원서는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료 환불 및 제출서류 반환이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 또는 보호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전형료 환불계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사진(3X4cm)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 면접고사, 실기고사 일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전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일시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사항]

- 우편접수 :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본관3층 309호 교무혁신처 입학팀
 - ※ 발송용봉투표지에 주소 및 정보 기재되어 있음(따로 주소를 기입하지 않아도 됨)
- 방문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능
 - ※ 원본대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학팀에 사전 연락 후 방문 가능
- 모든 서류의 제출의무는 수험생에게 있으며, 필수제출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서접수 취소와 전형료 환불은 일절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자가 입학팀에 방문하여 원본 제시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단, 공공기관의 FAX민원에 의한 발급서류는 인정하며, 판독이 어려울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는 바코드가 인쇄된 '발송용 봉투표지'를 반드시 출력하여 서류 봉투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기한 내에 입력 및 제출하지 않은 서류와 자료는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세부 목록은 각 전형별 안내사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6
2. 전형일정	7
3. 전형방법	8
4. 인터넷 원서접수	10
5. 전형기준	12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3
7. 지원 자격	15
8. 제출서류	20
9. 재외 한국학교 현황	24
10. 제출서류 서식	25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 부	모집단위	2023 모집인원	수 시 모집인원	정 시 모집인원	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신학부	신학과	26	10	수시모집 미충원시 선 발	[수시/정시] 입학정원 제한없음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3			
인문 사회 과학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44			
	경영학과	54			
	경찰행정학과	25			
	국제관광학과	28			
	영어학과	22			
	중국어학과	21			
I T 학부	컴퓨터공학과	21			
	ICT융합학과	26			
	산업보안학과	25			
간호복지 학부	간호학과	40			
	사회복지학과	31			
예술 학부	음악학 과	피아노	51		
		성악			
		현악			
		관악			
		작·편곡			
	공연예술학과	27			
디자인 학 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35	-	1	[정시] 입학정원 제한없음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5			
	섬유패션디자인학과	35			
합 계		569	10	1	

※ 음악학과와 공연예술학과의 전공별 선발인원은 지원인원 및 성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입학정원의 2%, 학부(과) 모집단위별로 10%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 수시에서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2. 전형일정

HANSEI UNIVERSITY
2023 신입생 재외국민

■ 수시모집

구 분	일 시	비 고	
원 서 접 수	2022. 9. 13(화) ~ 17(토) 18:00까지	인터넷 접수 (www.uwayapply.com)	
제출서류 마감	2022. 9. 23(금)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마감일 우체국 발송날짜까지 유효]	
실 기 고 사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2022. 10. 17(월) ~ 23(일)	본교 음악관(홈페이지 게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면 접 고 사	2022. 10. 29(토) ~ 30(일)	본교 고사장(홈페이지 게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2022. 11. 15(화)	본교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등록 (문서등록)	2022. 12. 16(금) ~ 19(월)	온라인 문서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2022. 12. 26(월) 18:00까지	본교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하지 않음	
충원합격자 등록마감	2022. 12. 27(화)	온라인 문서등록	
최종등록	2023. 2. 7(화) ~ 2. 9(목)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인터넷뱅킹 가능)	

※ 상기 전형일정은 지원자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추후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 정시모집

구 분	일 시	비 고	
원 서 접 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18:00까지	인터넷 접수 (www.uwayapply.com)	
제출서류 마감	2023. 1. 9(월)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마감일 우체국 발송날짜까지 유효)	
실 기 고 사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2023. 1. 5(목) ~ 9(월)	본교 고사장(홈페이지 게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디자인학부	2023. 1. 11(수)	본교 고사장(홈페이지 게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면 접 고 사	2023. 1. 10(화)	본교 고사장(홈페이지 게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2023. 2. 6(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최초 등록기간	2023. 2. 7(화) ~ 9(목)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인터넷뱅킹 가능)	
추가합격자 통보마감	2023. 2. 16(목) 18:00까지	개별통보(유선 또는 SMS)	
추가합격자 등록마감	2023. 2. 17(금)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인터넷뱅킹 가능)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시기	모집단위		서류	면접고사	실기고사
수시/정시	아래 모집단위 제외한 모두		적합/부적합	100%	-
수시/정시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	적합/부적합	-	100%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모집단위		고 사 내 용	
해당 모집단위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한 수준에서 출제 인성 및 신앙,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전공적성 및 기초지식,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등 평가 공통적으로 표현력, 태도 등 평가 	
음악 학과	피아노	자유곡 2곡 (작곡자가 다른 빠른 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실기 과제곡은 암보필수이며 반주자는 개인이 동반하여야 함 ※ 타악기전공 지원자 유의사항 - 스네어드럼, 마림바, 팀파니를 모두 연주해야 함 - 스네어드럼, 팀파니를 연주할 때는 악보를 볼 수 있음 - 스네어드럼만 개인악기 지참가능
	성악	아래 ①, ② 모두 ① 이탈리아 가사로 작곡된 가곡 또는 아리아 중 1곡 ② 독일어 가사로 작곡된 가곡 또는 아리아 중 1곡 ※ 아리아는 원어, 원조로 연주	
	관현악	자유곡 1곡	
	작·편곡	아래 ①, ② 모두 ① 연주 실기 : 독주 악기 자유곡 1곡 (피아노를 포함한 모든 악기) ② 화성품이 : 전통화성 전반	
공연예술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모두 ① 노래(1분30초) : 자유곡(뮤지컬 삽입곡 중 택일, 한국어만 가능) ② 특기(1분※환복시간 포함) : 자유안무(현대무용, 재즈댄스, 발레 등) 또는 연기 중 택 1 ※ MR, 의상, 소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준비해야함 (의자, 박스는 각 1개씩 고사장에 비치함) ※ MR은 고사 당일 USB로 제출해야 함 ※ MR은 USB에 문제가 있을시 사용불가하니 필히 확인 및 점검 	

모집단위	고 사 내 용	비고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디자인 / 사고의 전환 / 발상과 표현 중 택일 실기고사 당일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제공 : 화지, 테이블, 의자 개인준비 : 평면도구 일체(물감, 파스텔, 색연필, 연필, 붓 등) ※ 정착액 사용 가능

■ 각종 고사 관련

- 면접 및 실기고사의 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지정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면접고사일 전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 예시 질문을 사전 공개합니다.**
-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면접/실기고사 시간과 장소,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등 입시와 관련된 사항을 발표할 시 수험생은 반드시 이를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각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별로 해당되는 각종 고사를 결시할 경우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수험생은 반드시 입실완료시간까지 해당 고사장 또는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면접고사, 실기고사 일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전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고사에는 반드시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또는 학생부에 사진을 부착하여 출신 고등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지참), 지참하지 않은 수험생은 각종 고사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하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본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처리 합니다.
 - 본교는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입학 이후 개인정보는 학적업무 및 교육, 연구, 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의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계열구분, 졸업연도, 출신학교,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형기간 중 연락처, 보호자관련 사항, 은행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교에서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5년까지만 보유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합니다.
 - 원서 접수 대행업체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본교에 2023년도 재외국민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본교는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2023학년도 재외국민모집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본교에 2023학년도 재외국민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의 고유 식별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인터넷 원서접수

HANSEI UNIVERSITY
2023 신입생 재외국민

■ 기 간 : [수시] 2022. 9. 13(화) ~ 9. 17(토) 18:00 까지

[정시] 2022. 12. 29(목) ~ 2023. 1. 2(월) 18:00 까지

■ 원서접수 순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홈페이지(ipsi.hansei.ac.kr)의 “수시/정시모집 원서접수” 배너 Click •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후 한세대학교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관련 동의서 확인
↓	
원서 작성 (사진 첨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지원 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기입 • 누락, 오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파일(jpg,gif) upload
↓	
원서 작성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 확인 • 인터넷 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변경 및 취소 불가
↓	
전형료 결제 (원서접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료 납부 :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	
수험표 및 우편발송용 표지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번호가 표기된 수험표 출력(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시 지참) • 우편발송용 표지 출력 : 제출서류 발송시 사용
↓	
제출서류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발송 • 기한 : [수시] 2022. 9. 23(금) 17:00까지 [정시] 2023. 1. 9(월) 17:00까지 (마감일 우체국 발송날짜까지 유효)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며,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교는 제출서류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의 원서접수 완료를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료 환불 및 제출서류 반환이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면접고사, 실기고사 일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전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3×4cm)을 입학원서 사진란에 등재(upload)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정면 사진 파일(jpg, gif)을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배경사진, 옆모습, 선글라스 착용 등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재 착오 및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형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본교 입학팀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변경 및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3년 2월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료

면접고사 실시	실기고사 실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40,000원	70,000원	3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합니다.
- 접수 완료(전형료 납부완료)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 납부 이후 천재지변, 입원 또는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은 후 심의를 거쳐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공제)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전형료 50% 감면
- **전형료 환불신청방법 : 원서접수 시 신청 및 해당 자격증빙서류(통장사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업로드, 추후 확인 후 환불**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전형료 반환은 2023년 4월 30일 이전 본교가 공지한 반환기간에 반환함.(원서접수 시 반환방법 선택 : 금융기관계좌이체 또는 학교직접방문)
-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전형기준

- 합격자는 모집인원을 모집단위별 제한인원 내에서 입학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은 정원 제한 없이 선발 가능합니다.
- 성적 산출 또는 지원 자격 확인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자격 미달(서류미비)자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활용합니다.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모집인원 유동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발합니다.

면접고사 실시	실기고사 실시
① 면접고사 성적우수자 ② 연소자	① 실기고사 성적우수자 ② 연소자

- 총장은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하게 열등하거나 적절한 학력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이 제출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의 서류위조 또는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되며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 성적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학원서 접수 후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입학)후 발견 시에도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및 발표방법

수시모집	정시모집	발표방법
2022. 11. 15(화)	2023. 2. 6(월)	본교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유의사항, 합격증, 기타 입학 관련 서류 등을 출력하여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합격증은 지정된 출력 기간 이후 출력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 요망
-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최종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함

■ 등록

모집시기		납부기간	고지서	납부방법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문서등록)	2022. 12. 16(금) ~ 19(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조회 후 출력	온라인 문서등록
	최종등록	2023. 2. 7(화) ~ 2. 9(목)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인터넷뱅킹 가능)
정시모집	최초 등록기간	2023. 2. 7(화) ~ 2. 9(목)		

- 온라인 문서등록자는 추후 확정된 등록금을 2023. 2. 7(화) ~ 2.. 9(목)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등록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문서등록에는 별도의 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맞추어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내용이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등록해야 합니다.
- 모든 등록 기간 내에 지원자가 등록하지 않을 시 별도의 통보 없이 미등록 불합격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 및 이유에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미납하게 되면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등록금 연장 불가)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에의 이중등록을 금지합니다. 등록은 반드시 하나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에만 해야 합니다.
- 등록 및 등록금 납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총원합격자 발표

- 최초 합격자의 미등록, 등록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총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 총원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등록의사 확인을 위한 온라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시모집 총원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총원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발표합니다.
-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기재 오류나 부재중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총원합격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최대 3회 전화시도) 총원합격자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총원합격자 발표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에서 총원발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모집 온라인 문서등록 마감기한

구 분	발표 및 납부기간	발표방법	등록방법
총원합격자 발표	2022. 12. 26(월) 18:00까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온라인 문서등록
총원합격자 등록	2022. 12. 27(화) 정해진 시간까지		

※ [수시모집] 온라인 문서등록자는 최종등록기간 내에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 환 불

- 최종 등록금 환불
 - 환불기간 : 2023. 2. 16(목) 15시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 불가)
 - 등록금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엔 인터넷으로 환불신청(환불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
 - 환불금액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사유 발생일	학기 개시일 전	학기 개시일 후			
		30일 경과 전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90일 경과 후
반환금액	입학금+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6	등록금의 2/3	등록금의 1/2	반환하지 아니함

※ 환불 신청 기일경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환불신청자는 환불 신청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하므로 환불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격취소

- 합격자(총원 합격자 포함)가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 모든 전형 종료 후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및 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는 입학 후 학력 조회를 실시하여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2023년 2월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7. 지원 자격

■ 공통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명시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표준화 지원자격을 따름

■ 자격구분별 세부 지원 자격

전형 유형	지원 자격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이내)	<p>※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함</p> <p>1.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p> <p>2. 해외 재학기간의 1개년 기간(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 /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을 못했을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해외근무자의 정의</td> <td>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td> </tr> <tr> <td>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td> <td>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td> </tr> <tr> <td>해외재학기간의 정의</td> <td>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td> </tr> <tr> <td>해외체류일수의 조건</td> <td>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전형유형	지원 자격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함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2.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 외국인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지원문의 : ☎031-450-5183, 5140)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은 **상근직으로 국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최소 외국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자격 구분	최소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단위 : 연)				
	학 생		해외근무자		해외근무자의 배우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3년	학생 이수 기간의 3/4	3년	학생 이수 기간의 2/3	학생 이수 기간의 2/3
12년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12년	-	-	-
새터민	제한 없음		-	-	-

- 1) 위 기간은 해외근무자의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교 1개년을 포함한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 2)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3)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4) 12년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 ※ 재학기간: 부모의 근무기간 내에 해외에 재학한 기간(방학 및 휴일에 국내에서 임시로 체류한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 근무기간: 해외 근무자의 근무기간으로 경력증명서에 기록된 기간(해외 근무 상사주재원의 경우 파견 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국일부터 입국일 사이의 기간
- ※ 영주기간: 해당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최초 발급받은 날로부터 본교 자격인정 기준시점(학기 개시 전일)까지 해당국에 영주한 기간
- ※ 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 상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1개년 : 학생이 학기 개시일 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기간

■ 자격인정 공통 사항

○ 외국학교 인정 기준

-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 인정합니다.
 -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비인가학교(대한민국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홈스쿨링 및 사이버·통신 교육과정은 불인정
 - ※ 정규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한 경우 : 정규과정 성적이 있는 학기는 인정
- 국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 인정합니다. (※ 단, 새터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모가 근무(거주)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학교에서의 학력만을 인정합니다.
 - ※ 근무국가의 지역상황, 전쟁 등의 사유로 부모의 근무(거주)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을 경우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3국 수학을 예외적으로 인정

○ 외국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해당 학기에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부모)의 해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고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자격 요건 인정기간입니다. (보호자(부모)근무와 학생의 재학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자격요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
- 국내·외 초·중·고 교육과정 총 재학기간 12년(24학기) 이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 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외국학교 교육과정에 재학한 후에 국내 고등학교 과정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 고교과정은 지원 자격을 취득을 위한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불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교육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해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개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합니다.

○ 자격인정 기준시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	지원자 재학·체류 자격종료시점	보호자(부모) 근무·체류 자격종료시점
기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일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일
2023년 3월 졸업예정자 (일본 등)	지원자 2023년 3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3년 3월 졸업예정일

※ 단, 보호자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외국고등학교 재학·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근무·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타

- 1)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고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할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2%이내) 재학기간 인정기준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6-3-3제) 교육연한 12년 기준

- 13년 이상 학제인 외국 고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교육과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1~6학년 과정	2~7학년 과정
중학교	7~9학년 과정	8~10학년 과정
고등학교	10~12학년 과정	11~13학년 과정

- 12년 학제인 외국 고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12년 미만 학제인 외국의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국내 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 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이상)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외국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학년제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 가능)
- 외국 2개국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개 국가 내 학제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혼합 이수한 경우 포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미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할 경우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12학년까지만 이수한 경우 : 10~12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 11~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학기)

- ※ 단, 외국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 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11년 이상 초·중등과정을 수료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월반 또는 조기졸업 관련 사유서를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기타

- 1)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12년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 없이 12년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8.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영주교포 자녀	해외 근무자의 자녀			유치 과학자 / 교수 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비고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 근무 상사 직원 자녀	외국 정부 / 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		해외 현지 회사 근무자 자녀	해외 현지 자영업 자녀	해외 선교사 자녀	재외 국민	결혼 이주민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 신청서	●	●	●	●	●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2	초중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	●	●	●	●		검정고시 학력은 인정되지 않음 국내고등학교 : 학생부 대체 가능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	●	●	●	●	●	●	●	●	●		부모 이혼 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학생 본인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5	주민등록말소등본	●												
6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											영주권 취득일 명기	
7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만)	● (학생만)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학생만)				
9	여권 사본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만)	● (학생만)			
10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외국 근무 경력기간 명기	
11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국내 은행권 발급	
12	외국정부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서							●						
13	현지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현지 법인 법인세 납부 이력				●	●								
14	선교단체 등록증 사본 파송선교사 확인서 재직증명서								●				파송기간 명기	
15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16	혼인관계증명서										●			
17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 보호담당관 발급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국내고교졸업(예정)증명서 중 택1												○ 학력인정증명서는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 한 증명서
18	제 3국 수학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영사관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구분	방법	비고
외국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학제상의 고교 교육 연한을 기준(10-12학년)으로 제출 ※영국학제의 경우 11-13학년 과정제출 국내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외국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국내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와 해당 학기의 외국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증명서에는 재학기간, 학기가 명시 되어있어야 함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반드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외국고등학교 성적체계 자료를 성적증명서 뒤에 첨부해야 함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재학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원서접수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장 (Diploma) ※교육부 학력 인정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원서접수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외국고교 재학기간 확인서 (본교 양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후 출력하여 함께 제출
출입국사실 증명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고등학교 이수 해당 기간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 조회 기간의 시작일은 외국고등학교 입학일을 포함해야 함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국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국내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장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국내 졸업 학력인정 고등학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고등학교 일부 과정 이수자 해당

※ 서류 사본 제출 후에 최종 합격했을 경우, 본교 입학 전까지 원본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외국고등학교 고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원서접수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코로나19로 인해)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공증을 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사본 제출 후에 최종 합격했을 경우, 본교 입학 전까지 원본 서류를 입학팀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교육부 승인 제외 한국학교는 제외
※가입국 현황 확인 (www.0404.go.kr)
- 외국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 불충분,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증명서를 위·변조한 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합격 또는 입학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시,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 유의사항

- 한국어로 발급되지 아니한(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거나 학교 소재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단,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학교가 발급한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7.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가 :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우증명을 받은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03개국)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가 :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우증명을 받은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해야 함.
- ※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재외한국학교(24페이지 참조) 출신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미제출,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 미제출자와 서류심사 결과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에 지원 자격 해당여부와 서류제출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해당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본교 입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도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표(20페이지)의 순서대로 철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사본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제출기간 내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입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입학 전까지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외발급서류의 경우 해외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서류는 유효합니다.
-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본이 한 부만 발행되는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거주국의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조기졸업 및 월반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학교의 사유서 및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 자격심사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외국학교 졸업예정자가 최종합격할 경우 2023년 2월 28일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제출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에 따라 서류위조 또는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하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기간 필히 명기), 정부 초청서 또는 추천서
- 상사직원 : 재직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변경·폐지)신고(수리)서 (외국환은행장 또는 지경부장관이 발행)
- 현지법인·자영업자 / 해외선교사 : 보호자 재직증명서(해외 선교사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 /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기), 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 회사근무자), 보호자 세금납입증명서(법인세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해외선교사 파송 증명서

※ **입학상담 안내 -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방문상담 : 본교 대학원관 7F 국제교류원
- 전화상담 : 031-450-5183, 5140 [팩스 031-450-5014]
- 홈페이지 : <http://hsiec.hansei.ac.kr>

9. 재외 한국학교 현황

국가	관할공관	학교명	설립연월일
일본	주일대사관	동 경 한 국 학 교	1954.04.26
	주오사카총영사관	교 토 국 제 학 교	1961.05.11
		오 사 카 금 강 학 교	1961.02.24
		건 국 한 국 학 교	1976.10.01
중국	주중대사관	북 경 한 국 국 제 학 교	1998.08.26
		천 진 한 국 국 제 학 교	2001.03.05
	주상하이총영사관	상 해 한 국 국 제 학 교	1999.07.06
		무 석 한 국 학 교	2006.09.01
		소 주 한 국 학 교	2013.11.28
	주칭따오총영사관	연 대 한 국 학 교	2001.03.05
		칭 다 오 청 운 한 국 학 교	2006.05.30
	주선양총영사관	대 련 한 국 국 제 학 교	2003.12.23
		선 양 한 국 국 제 학 교	2006.07.26
		연 변 한 국 학 교	1998.02.19
	주광저우총영사관	광 저 우 한 국 학 교	2014.02.07
	주홍콩총영사관	홍 콩 한 국 국 제 학 교	1988.03.01
대만	주타이베이대표부	타 이 뻬 이 한 국 학 교	1961.10.01
		까 오 송 한 국 학 교	1961.01.25
베트남	주베트남대사관	하 노 이 한 국 국 제 학 교	2006.03.21
	주호치민총영사관	호 치 민 시 한 국 국 제 학 교	1998.09.01
사우디아라비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리 야 드 한 국 학 교	1979.04.24
	주젯다총영사관	젯 다 한 국 학 교	1976.09.18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자 카 르 타 한 국 국 제 학 교	1976.01.05
싱가포르	주싱가포르대사관	싱 가 포 르 한 국 국 제 학 교	1993.02.17
태국	주태국대사관	방 곡 한 국 국 제 학 교	2002.02.18
필리핀	주필리핀대사관	필 리 핀 한 국 국 제 학 교	2005.07.11
파라과이	주파라과이대사관	파 라 과 이 한 국 학 교	1992.03.01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아 르 헨 티 나 한 국 학 교	1995.01.23
상파울로	주상파울로대사관	브 라 질 한 국 학 교	1998.02.12
러시아	주러시아대사관	모 스 크 바 한 국 학 교	1992.02.14
이란	주이란대사관	테 헤 란 한 국 학 교	1976.04.30
이집트	주이집트대사관	카 이 로 한 국 학 교	1980.04.15

외국 고교 재학기간 확인서

■ 지원자 기본사항

모집단위 (지원 전공)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외국고교 재학기록

학교명	재학기간	국가명	도시명	정규학교 여부(O/X)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상기와 같이 외국고등학교의 재학기간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한세대학교 총장 귀하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만 기재합니다.

※ 2개 이상의 외국고등학교를 재학한 경우 재학한 모든 고등학교를 작성하며 고등학교 과정의 일부를 국내에서 재학한 경우 국내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최근에 재학한 고등학교부터 작성합니다.

※ 외국고등학교명은 영문, 국내고등학교명은 한글로 표기합니다.

